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12. 9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12. 9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99. 12. 1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류인섭)

가. 제안이유

-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시 수수료 징수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위생관련 영업의 신고시 수수료 징수조항이 일부 폐지되었음.

나. 주요골자

-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위생관련 영업의 신고시 수수료 징수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일부 항목을 삭제 및 개정코자 함.
 - 현행 : 위생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제
 - 변경 : 위생관련 영업의 개설통보제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7호
의결년월일 (제75회)	1999. 12. 24

제출년월일 : 1999. 12. 9

제출자 : 부천시장

 제안이유

-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시 수수료 징수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위생관련 영업의 신고시 수수료 징수조항이 일부 폐지되었음.

 주요골자

-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위생관련 영업의 신고시 수수료 징수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일부 항목을 삭제 및 개정코자 함.
 - 현행 : 위생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제
 - 변경 : 위생관련 영업의 개설통보제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8호 환경위생관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항목을 삭제하고, (17)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 위생처리업 신고"로, (17) "위생처리업 신고"로 (18)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 위생처리업 변경신고"를, (18) "위생처리업 변경신고"로, (21) "기타위생용품제조업 및 장난감제조업 신고"를 (21)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로, (22) "기타위생용품제조업 및 장난감제조업 변경신고"를 (22) "기타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제증명수수료요율표				(별표) 제증명수수료요율표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8. 환경위생관계				8. 환경위생관계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1) 생략	—	—	생략	(1)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2) 생략	—	—		(2) 현행과 같음	—	—	같음
(3) 생략	—	—		(3) 현행과 같음	—	—	
(4) 생략	—	—		(4) 현행과 같음	—	—	
(5) 호텔 및 콘도미니엄업 신고	1건	90,000원		(5) 삭제	—	—	
(6) 호텔 및 콘도미니엄업 변경신고	1건	45,000원		(6) 삭제	—	—	
(7) 여관업 신고	1건	30,000원		(7) 삭제	—	—	
(8) 여관업 변경신고	1건	15,000원		(8) 삭제	—	—	

(9)여인숙업 신고	1건	8,000원	(9)삭제	—	—	
(10)여인숙업 변경신고	1건	4,000원	(10)삭제	—	—	
(11)공동탕, 가족탕, 한증 막업 신고	1건	10,000원	(11)삭제	—	—	
(12)공동탕, 가족탕, 한증 막업 변경신고	1건	5,000원	(12)삭제	—	—	
(13)사우나탕, 증기탕, 복 합목욕탕업 신고	1건	50,000원	(13)삭제	—	—	
(14)사우나탕, 증기탕, 복 합목욕탕업 변경신고	1건	25,000원	(14)삭제	—	—	
(15)이용 및 미용업 신고	1건	10,000원	(15)삭제	—	—	
(16)이용 및 미용업 변경 신고	1건	5,000원	(16)삭제	—	—	
(17)위생관리용역업, 세탁 업, 위생처리업 신고	1건	3,500원	(17)위생처리업 신고	1건	3,500원	
(18)위생관리용역업, 세탁 업, 위생처리업 변경 신고	1건	2,300원	(18)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2,300원	
(19)생략	—	—	(19)현행과 같음	—	—	
(20)생략	—	—	(20)현행과 같음	—	—	
(21)기타위생용품제조업 및 장난감제조업 신 고	1건	3,500원	(21)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 고	1건	3,500원	
(22)기타위생용품제조업 및 장난감제조업 변 경신고	1건	2,300원	(22)기타위생용품제조업 변 경신고	1건	2,300원	
(23)생략	—	—	(23)현행과 같음	—	—	
(24)생략	—	—	(24)현행과 같음	—	—	
(25)생략	—	—	(25)현행과 같음	—	—	

□ 공중위생관리법 제정

○ 법률 제5839호(99. 2. 8)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률의 폐지) 공중위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유기장업·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의 유기장업·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한다.

※ 수수료징수 근거

- 종전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 -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하였으나 99. 8. 9일자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어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관련항목을 삭제코자 함